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5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김대식ㆍ서지영ㆍ임종득

김 건 · 강선영 · 윤한홍

인요한 • 곽규택 • 고동진

조경태 · 김예지 · 배현진

김민전 · 정성국 · 김장겸

서범수 · 김소희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,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.

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.

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경우 학사학위,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학사학위,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

수업연한, 입학자격,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9 조의3제3항,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, 제33조제2항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,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

제3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학사학위과정·석사학위과정·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: 8년 이 상으로 하되, 학사학위과정·석사학위과정·박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통합과정에"를 "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·석사학 위과정·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"로 한다.

제3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학사학위·석사학위·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 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학위과정의 통합) ①	제29조의3(학위과정의 통합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
	있는 대학원(제30조에 따른 대
	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은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</u>
	경우 학사학위, 석사학위 및
	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
	<u>정을 둘 수 있다.</u>
제31조(수업연한) ① 대학 및 대	제31조(수업연한) ①
학원의 수업연한(授業年限)은	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학사학위과정 · 석사학위과
	<u>정·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</u>
	정: 8년 이상으로 하되, 학사
	학위과정 · 석사학위과정 · 박
	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
	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입학자격) ① (생 략)	제33조(입학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	②
과정의 <u>통합과정에</u> 입학할 수	<u>통합과정 또는 학사</u>
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	학위과정 • 석사학위과정 • 박

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 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으로 한다.

③ ~ ④ (생 략)

제35조(학위의 수여) ① ~ ④ 제35조(학위의 수여) ① ~ ④ (현 (생 략)

<신 설>

⑤ ~ ⑥ (생 략)

사학위과정의	통합과정에	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행과 같음)

⑤ 학사학위 · 석사학위 · 박사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 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 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를 수여할 수 있다.

⑥ ~ ⑦ (현행 제5항 및 제6 항과 같음)